

2021년 제1차 경찰공무원 채용 필기시험 안내 (전북청)

□ 시험 일시 : '21. 3. 6.(토) 10:00~11:40 (100분)

- 시험교실 입실 07:30 ~ 09:00까지 입실 완료
 ※ 고사장별 발열검사 장소 기준 09:20:59 이후 입실 불가

□ 응시분야 및 응시번호별 시험 장소

분야	수험번호	응시인원	장 소	비 고
일반(남)	10001~10560	560	전주 영생 고등학교	제1시험장
일반(남)	10561~11184	624	전주 공업 고등학교	제2시험장
전의경	30001~30067	67		
일반(여)	20001~20507	507	전주 우림 중학교	제3시험장

- 모든 시험은 응시한 시·도청의 지정된 시험 장소에서만 응시 가능
- 타 지역 또는 타 시험장에서 응시 불가
- 신분증 미소지자 응시불가

□ 준비물 : 신분증, 응시표, 컴퓨터용싸인펜, 수정테이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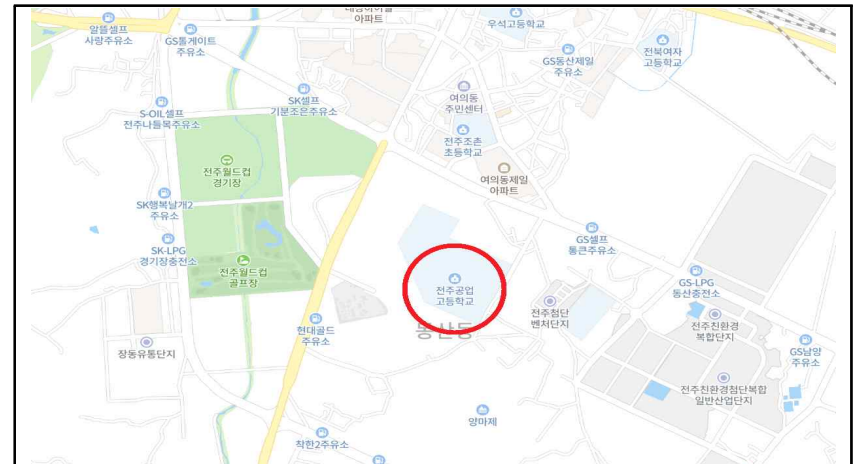
- 신분증은 주민등록증(주민등록 발급 신청 확인서), 운전면허증, 주민등록번호가 인쇄된 장애인 등록증, 여권만 인정 미소지자 시험불가
- 시험장에서는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여야 하고, 미착용자는 입실이 불가, 예비용 마스크도 준비
- 응시표는 수험생이 직접 사이트에서 출력하여 지참, 분실한 경우 인터넷 원서접수사이트에서 재 출력 후 시험응시
- 품질이 불량인 컴퓨터용싸인펜은 채점시 오류가 날 수 있으니 주의
- 전자식 화면표시기(LCD, LED 등)가 모두 없는 시침, 분침, 초침이 있는 아날로그 시계만 허용

□ 시험장 약도

- 제1시험장 : 전주영생고등학교 (전주시 완산구 천잠로 333)
 - 응시대상 : 일반남자(10001~10560)
 - 시험장 약도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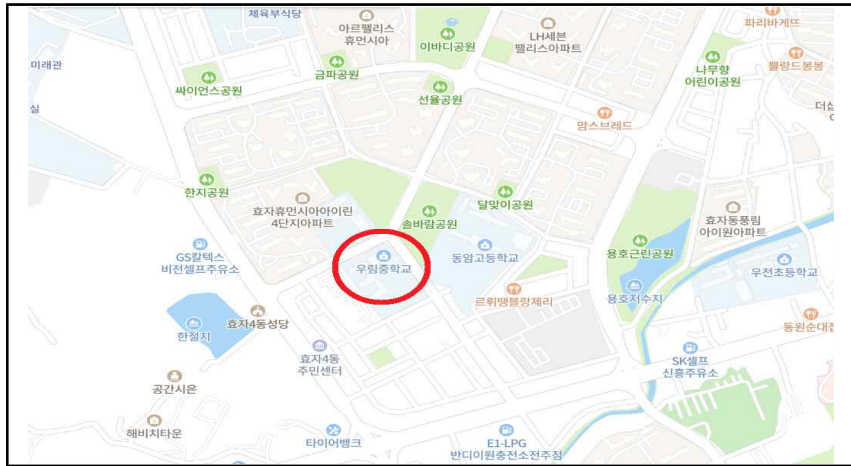
- 제2시험장 : 전주공업고등학교 (전주시 덕진구 여산로 101)
 - 응시대상 : 일반남자(10561~11184), 전의경(30001~30067)
 - 시험장 약도



○ 제3시험장 : 전주우림중학교 (전주시 완산구 우전로 119)

- 응시대상 : **일반여자(20001~20507)**

- 시험장 약도



□ 응시생 유의사항

-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고, 자가용 이용 자제(시험장 차량출입 통제)
 - 대중교통 이용 관련 노선 등 본인 확인 필수
 - 시험장 인근 상가 등 불법 주·정차 위반시 단속·견인 조치
- 시험장 내 모든 구역(운동장 포함)이 초·중등교육법에 따라 금연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므로, **학교 내에서 금연**
- 붙임1)2) 안내문 반드시 필독
 - 붙임1 : 코로나19 관련 유의사항
 - 붙임2 : 필기시험 유의사항

□ **이의제기** : '21. 3. 6.(토) 종료 직후 ~ 7.(일) 18:00, 원서접수사이트

□ **합격발표** : '21. 3. 12.(금) 17:00, 전라북도경찰청 홈페이지

□ **기타문의** : 전라북도경찰청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 교육계
(☎063-280-8325, 8625)

붙임 1 | 코로나19 관련 유의사항

가. 코로나19 확진자 및 보건당국으로부터 ‘자가격리 통지서’를 받아 격리 중인 응시자는 보건당국과 협의 등 사전 조치 후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.

▶ 확진자의 경우 응시를 희망하며, 주치의로부터 응시 가능함을 확인 받은 경우 필기시험은 응시 가능*, 실기시험은 분야별 실시 가능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

* 단, 치료받고 있는 병원 또는 생활치료시설의 1인실을 배정받아야 함

▶ **자가격리자는 별도 일시 또는 별도 장소에서 특별시험 실시(붙임3)**

나. 시험 시작 전 및 시험 진행 중 유증상자는 시험이 중지될 수 있으며, 별도의 시간을 지정하여 실시될 수 있습니다.

다. 시험장에서는 **마스크를 상시 착용**하여야 하고, 미착용자는 입실이 불가합니다. 예비용 마스크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.

라. 시험장 및 휴식시간 등에도 다른 응시자와 가급적 1.5m 이상 거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마. 시험감독관이 실시하는 본인 확인 시에는 마스크를 잠시 내리고 본인 여부 확인에 협조해야 합니다.

바. 다음 조치에 따르지 않을 경우 감독관이 즉시 퇴실조치 합니다.

- ▶ 발열검사 등 시험장 출입 전 방역 확인 요구에 이유 없이 불응한 경우
- ▶ 감독관의 별도 안내 없이 마스크를 탈의한 경우
- ▶ 그 밖에 감독관이 판단하여 응시자에게 피해를 준다고 판단되는 경우

붙임 2 필기시험 유의사항

- 가. 시험당일 09:20까지 해당 시험교실에 입실 후 본인여부를 확인 받아야 하며, 시험에 있어 부정행위(도핑테스트 비정상분석 결과자 포함)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(응시연령, 가산점, 자격증 등)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「경찰공무원임용령」 제46조 의해 당해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, 향후 5년간 임용시험에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.
※ 부정행위 유형 및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는 붙임 1, 경찰공무원임용령 제46조 참조
- 나. 필기시험 OMR 답안지의 기재 및 표기사항은 ‘컴퓨터용 흑색 사인펜’ 만을 사용하여야 하며 답안 수정은 응시자 본인이 가져온 수정테이프만을 사용하여 수정 가능하며, 수정테이프 이외의 도구를 사용하여 정정하였을 경우 해당 문제의 답을 무효 처리합니다.
- 다. 응시자는 답안 작성 시 반드시 응시표에 기재된 과목순서에 맞추어 표기하여야 하며, 과목순서를 바꾸어 표기한 경우에도 응시표에 기재된 과목순서대로 채점되므로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※ 일반공채(101단)의 선택과목은 「조정점수제도」 시행
- 라. 필기시험 응시자는 일체의 통신장비(휴대용전화기, 디지털카메라, MP3, 전자사전, 카메라펜, 카메라 안경, 이어폰, 스마트워치 등)와 모자를 휴대·착용하여서는 아니 되며, 발견된 경우 부정행위자로 간주하여 처리될 수 있습니다.
※ 휴대폰 등 통신장비는 배부되는 수거봉투에 넣어 시험실시 전 제출하여야 하며, 제출하지 않고 소지하고 있거나 가방에 넣어둔 경우도 부정행위로 적발
- 마. 시험시간 관리의 책임은 전적으로 응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.
시험 감독관의 시험 종료시간 예고, 시험실 내 비치된 시계가 있는 경우라도 시간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응시자는 개인용 시계를 준비해서, 본인의 시계로 시험시간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※ 휴대 가능한 시계 : 전자식 화면표시기(LCD, LED 등)가 모두 없는 시침, 분침, 초침이 있는 아날로그 시계만 허용
- 바. 답안지 교체는 시험종료 전까지 가능하나, 시험종료 타종이 올리면, 답안 작성을 즉시 멈추고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답안을 제출하여야 합니다. 계속 작성 시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- 사. 시험시간 중에는 1회에 한해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으나, 시험 전 이뇨 작용을 일으키는 음료를 마시는 것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다음의 사용원칙과 절차 등에 따라 화장실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.

<사용 원칙>

1. 사용시간 : 10:30 ~ 11:20 (시험시작 30분 이후 ~ 시험종료 20분 전)
※ 화장실 사용과 관련된 모든 시간은 시험시간에 포함
2. 사용횟수 : 1인당 1회에 한함

<사용 절차> (소음 주의)

1. 시험 중 손을 들어 화장실 사용 요청
※ 화장실 사용자가 많은 경우 대기시간이 발생할 수 있음
2. 문제지와 답안지를 뒤집은 후 복도로 이동, 복도감독관과 동행하여 이동
3. 응시자 소지품 검사(동성 복도감독관이 실시)
 - ① 주머니를 뒤집어 감독관에게 보여 줌
 - ② 휴대용스캐너(MD)를 이용하여 전자기기 검사 실시
4. 복도감독관이 지정한 화장실 및 용변 칸 사용
5. 화장실 사용 후 복도감독관이 소지품 검사 재 실시
6. 복도감독관의 안내에 따라 해당 시험실 입실

<유의 사항>

1. 사용 시간대 외 및 제한 횟수를 초과하여 화장실 사용 시 재입실 불가(관리본부 대기)
2. 시험 관련 자료 등 소지, 화장실 내 시험 관련 내용 기재 등의 경우 부정행위로 적발
3. 시험 중 화장실 사용 가능 시간은 본인 좌석에서 손을 들어 의사표시를 한 시점을 기준으로 함
※ 11:20:59에 손을 들어 의사표시를 한 경우 화장실 사용 및 재입실 가능

- 아. 응시표 출력사항 외 시험과 관련된 내용이 인쇄 또는 메모된 응시표를 시험시간 중 소지하고 있는 경우 당해시험 무효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, 특히 부정행위 자료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5년간 공무원 임용시험 응시 자격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붙임 3 자가격리자 특별시험 장소

□ 특별시험 장소 : 전북경찰청 교육센터(전주시 덕진구 온고을로 299)

※ 전주덕진경찰서 뒤편 강력범죄수사대 건물 1층

- 응시대상 : 자가격리자
- 시험장 약도



- 시험장 약도(확대)

